

MG재형저축 상품설명서

(2015. 4. 20 현재)

이 설명서는 금고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령, MG재형저축 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MG재형저축
- 상품의 특징 :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유적립식 예금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가입자격 | MG재형저축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위 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 | | | | | |
| 가입유형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일반 재형저축</th> <th colspan="2">서민형 재형저축</th> </tr> <tr> <th>소득형</th> <th>청년형</th> </tr> </thead> <tbody> <tr> <td>위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고객 중 서민형 재형저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td> <td>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백만원 이하 </td> <td>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주1)}에 재직하는 청년^{주2)} </td> </tr> </tbody> </table> | | | 일반 재형저축 | 서민형 재형저축 | | 소득형 | 청년형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고객 중 서민형 재형저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백만원 이하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주1)} 에 재직하는 청년^{주2)} |
| | 일반 재형저축 | 서민형 재형저축 | | | | | | | | | |
| 소득형 | | 청년형 | | | | | | | | | |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고객 중 서민형 재형저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백만원 이하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주1)} 에 재직하는 청년^{주2)} | | | | | | | | | |
| 주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주2)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가입시 제출서류 | 일반 재형저축 |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청년형 | | | |
| |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 ①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② 고객의 회사가 발급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 요건확인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 ③ 병적증명서(병역을 이행한 만30세 이상인 경우) ④ 최종학력 증명서(초등학교 중퇴 이하는 미제출) | | | |
| 계약기간 | 7년 (계약기간 연장시 최대 10년까지 가입가능) | | | | |
| 계약기간 연장 | <input type="checkbox"/> 한 차례만 3년 범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input type="checkbox"/> 계약기간의 연장은 예금의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 | | | |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재형저축을 합산)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 | | | | |
| 상품유형 | <input type="checkbox"/> 이 예금 가입시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1. MG재형저축(A)형 2. MG재형저축(B)형 [상품유형 간략비교]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1 882 916 927">MG재형저축(A형)</th> <th data-bbox="916 882 1514 927">MG재형저축(B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1 927 916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3년간 고정이율로 적용 - 3년 후부터 매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td> <td data-bbox="916 927 1514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td> </tr> </tbody> </table>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3년간 고정이율로 적용 - 3년 후부터 매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3년간 고정이율로 적용 - 3년 후부터 매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 | | | |
| <input type="checkbox"/> 상품유형은 계좌별로 지정하며 지정하신 상품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 | |
| 이자계산 | 이 예금의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예금지급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용합니다. 다만, 특약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나목의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단리로 적용합니다. | | | | |
| 이율적용 | <input type="checkbox"/> 이율표 참조 <input type="checkbox"/> 기본이율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1 1326 916 1370">MG재형저축(A형)</th> <th data-bbox="916 1326 1514 1370">MG재형저축(B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1 1370 916 16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이율표상의 36개월 이율)을 3년간 적용 - 3년 경과 이후 매1년(회전주기)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 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적용 </td> <td data-bbox="916 1370 1514 16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1년간 적용 - 1년 이후에는 매1년(회전주기)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 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적용 </td> </tr> </tbody> </table>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이율표상의 36개월 이율)을 3년간 적용 - 3년 경과 이후 매1년(회전주기)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 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1년간 적용 - 1년 이후에는 매1년(회전주기)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 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적용 |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이율표상의 36개월 이율)을 3년간 적용 - 3년 경과 이후 매1년(회전주기)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 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1년간 적용 - 1년 이후에는 매1년(회전주기)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 이율(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을 적용 | | | | |
|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이율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1 1706 916 1751">MG재형저축(A형)</th> <th data-bbox="916 1706 1514 1751">MG재형저축(B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1 1751 916 2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중도해지시 계약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계약일로부터 3년 및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적용 </td> <td data-bbox="916 1751 1514 2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 - 미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td> </tr> </tbody> </table>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중도해지시 계약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계약일로부터 3년 및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 - 미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 |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중도해지시 계약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계약일로부터 3년 및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 - 미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이율적용 | <p>○ 특별중도해지이율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63 304 1497 515"> <tr> <td>1. 천재·지변</td> </tr> <tr> <td>2. 저축자의 퇴직</td> </tr> <tr> <td>3. 사업장의 폐업</td> </tr> <tr> <td>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td> </tr> <tr> <td>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 </tr> </table> <p>- 제출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세율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부과)</p> <p>○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에 따른 해지시 적용이율</p> <p>- 국세청의 가입대상 부적격 판정으로 인하여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새마을금고가 국세청에게서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상품 유형별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해지일의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예금 해지일에 고시된 온라인보통예탁금의 이율을 적용</p> <p>○ 만기후이율</p> <table border="1" data-bbox="333 1023 1497 1146"> <thead> <tr> <th>MG재형저축(A형)</th> <th>MG재형저축(B형)</th> </tr> </thead> <tbody> <tr> <td>-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td> <td>-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td> </tr> </tbody> </table> |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 | -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 |
| 1. 천재·지변 | | | | | | | | | | |
| 2. 저축자의 퇴직 | | | | | | | | | | |
| 3. 사업장의 폐업 | | | | | | | | | | |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 | | | | | |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 | | | |
| MG재형저축(A형) | MG재형저축(B형) | | | | | | | | | |
| -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 | -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 | | | | | | | | | |
| 이자지급 | 예금 해지시 일시 지급 | | | | | | | | | |
| 계약해지 |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 가능 | | | | | | | | | |
| 세율적용 | <p>○ 세율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의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p>※ 다만, 감면받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이자소득의 1.4%) 부과</p> <p>○ 일반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p> <p>※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를 과세(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p> <table border="1" data-bbox="349 1588 1481 1765"> <tr> <td colspan="2">1.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재형저축</td> </tr> <tr> <th>일반 재형저축</th> <th>서민형(소득형, 청년형) 재형저축</th> </tr> <tr> <td>- 최초 계약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td> <td>-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td> </tr> </table> <p>※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해지시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체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p> <p>2.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만기후 이자)의 경우</p> <p>3. 국세청의 가입대상 부적격 통보로 인하여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예금 해지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p> | 1.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재형저축 | | 일반 재형저축 | 서민형(소득형, 청년형) 재형저축 | - 최초 계약일로부터 7년 이 되는 날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이 되는 날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 | | |
| 1.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재형저축 | | | | | | | | | | |
| 일반 재형저축 | 서민형(소득형, 청년형) 재형저축 | | | | | | | | | |
| - 최초 계약일로부터 7년 이 되는 날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이 되는 날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 | | | | | | | | |

| | |
|----------|---|
| 제한 사항 | ○ 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분할(부분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예금자 보호여부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소정의 이자란 예금자보호준비금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 위 내용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새마을금고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45-9114, www.kfcc.co.kr) |

3 유의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기본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 자격검증에 따라 일반 재형저축에서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또는 서민형 재형저축에서 일반 재형저축으로 가입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은 가입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및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는 가입유형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국세청에게서 예금 가입일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 예금의 가입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에 예금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납입이 중단되며 새마을금고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관련 법령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새마을금고에 알려야 합니다.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www.kfcc.co.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